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(중기청)」 취급기준 개정

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(중기청)」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거

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·시행 등 알림」 (보증 2016-11759, '16.05.17)

2. 주요내용

개정 전	개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행일반자금 ○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행일반자금(협약 대출금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 만기 일시상환 : 연2.7% -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: 연2.9% ○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출금리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름
(정책자금 연계) 재단의 지자체 정책자금과 연계 가능	(정책자금 연계) 재단의 지자체 정책자금과 연계 가능 ※ 지자체 정책자금과 연계시, 협약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차보전 적용 예시 : 지자체 5년 만기 정책자금 이차

